

조시현

보낸 사람: Ha Jong-moon <moonstar@hucc.hanshin.ac.kr>  
 받는 사람: 조시현 <shcho@cc.sungshin.ac.kr>  
 보낸 날짜: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오후 4:28  
 첨부: Data-1.hwp  
 제목: 답변-연락(하중문)

수업하랴 기소장 만들랴 정신 없으시죠. 그대신 12월에 일본 가서 있으면서 어디 좋은 술집이 있는지 지금 인터넷과 옛 기억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조금만 걸아가면 진보초라는 서점가 겸 대학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쓸 만한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월요일 기소장 본문에서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죠.

1. 이타가키 세이시로 ; 조선군 사령관 41.7-45.2, 45.2-45.4 제17방면군 사령관(조선군을 포함)
2. 칙령 ; 칙령은 천황의 국무대권에 의한 명령을 가리킨다. 긴급칙령을 제외하고, 독립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의 3종류가 있다. 독립명령은 메이지헌법 9조 후단 "천황은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게 한다"가 근거조항이다. 칙령에는 上諭(천황의 말, 추밀원의 심의를 받았으면 그 내용 기재)를 부치고, 親署한 다음 御璽를 찍고, 내각 총리대신이 날짜를 기입하고 副署하거나, 다른 국무대신 혹은 주임 국무대신과 함께 부서한다.
3. 총독의 권한 ; 조선의 통치는 원칙적으로 모두 총독에게 천황으로부터 위임된다. 단지 관제의 제정, 관리의 임면은 천황의 親裁, 즉 국무대신의 보필에 의하며, 예산은 의회의 협찬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외에는 일본본토의 경우 勅裁에 의해 정해질 사항도 총독의 권한을 정해지며, 각성 대신의 권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총독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총괄했다.

총독은 행정권과 함께 입법권도 가지며 총독의 명령인 制令과 총독부령으로써 조선의 법규를 제정했다. 식민지를 관장하는 척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선총독은 예외로 척무대신이 조선총독을 감독하는 권한은 없다고 정해졌다. 1943년의 조선총독부의 사무統理를 내무성이 담당하게 되고 각성의 지시권이 인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4. 군사령관의 관장사항 ; 군사령관은 기본적으로 휘하부대를 전면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지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참고로 일본군 체계를 정리해 놓은 첨부문서를 보냅니다.

5. 渾春(혼춘), 송산, 입맹, 군명, 등총 의 중국 발음 ; 이 부분은 내일까지 조사해서 보내드리죠.

이 정도면 답변이 다 되었나 모르겠네요.

수업이 있어서 여기까지 적고 실례하겠습니다.

하중문,